교육품질관리(CQI)규정 5-1-23

규정번호 5-1-23
제정일자 2015.12.3
최근개정 2026.7.20
개정차수 13차 개정
관리부서 교육과정혁신팀

[규정명칭 변경 및 전면개정 2024.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의 품질을 관리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품질관리(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란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및 성과에 관한 주요사항을 분석하여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2. “교과 교육과정” 이란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점 부여 기반의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교과 교육과정은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3.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교과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품질관리 영역) 교육품질관리 영역은 교과(전공, 교양)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주관부서 및 관리부서) 교육품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교무처 교육과정혁신팀에서 주관하며,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 교육과정 : 학과, 융합교육지원센터, 학사학위운영센터, 통합전공 관리부서
2. 교양 교육과정 : 교육과정혁신팀
3. 비교과 교육과정 : AI・IR센터, 비교과 관리부서(개정 2026.2.6.)

제5조(교육품질관리위원회) 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품질관리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내·외부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9명 이내의 내부위원과 2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교육품질관리보고서 발간

2. 전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인증 평가결과(개발인증, 운영인증, 성과인증)

3. 교양 교육과정 : 교양교육 품질관리 보고서

4. 비교과 교육과정 :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평가결과

5. 기타 교육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교육품질관리의 환류체계를 위하여 연간 교육품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며, 해당 보고서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리절차) ① 교육과정 품질관리는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자료 수집 등 품질관리 항목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회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

② 교육품질관리는 교육과정혁신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할 수 있도록 주관한다.

③ 전공 교육과정 품질관리는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한다.(개정 2026.7.20.)

④ 교양교육 품질관리는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직업기초 포함) 제고를 위해 작성된 교양 품질 교양교육 품질관리 보고서 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한다.

⑤ 비교과 교육과정 품질관리는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제 기반으로 작성된 프로그램별 성과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한다.

제7조(운영 및 환류) ① 효율적인 교육과정 품질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는 매년 한차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결과를 토대로 연간 교육품질분석보고서를 발간하며, 공유를 통해 교육과정 품질 개선에 활용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3.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제3조제2항, 제3항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을 “교육혁신지원센터”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13> (생략)
<14> 교육품질관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변경한다.
<15> - <25>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규정명 변경 및 전면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3호)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3항)